

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이예찬*·이재진**

국문초록

〈언론중재법〉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 개시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면 행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혐의가 보도된 자의 인격권은 면밀히 보호하면서도 중대한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는 받지 않은 자의 구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후보도청구 요건 완화를 제시한다. 즉 범죄보도 당사자가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선된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이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SA0714.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스포츠법, SI0102.

언론/미디어정책

주제어: 언론중재법, 범죄보도, 명예훼손, 추후보도, 행정처분, 무효확인·취소판결

논문접수일: 2020년 10월 20일, 심사일: 11월 4일, 게재확정일: 12월 10일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chan3737@pac.or.kr), 제1저자

**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jjlee@hanyang.ac.kr), 교신저자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상호 충돌하는 다양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 갈등을 빚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기본권을 적절히 비교형량 함으로써 이들 이익의 상충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법익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균형을 합리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이재진, 2006).

위와 같이 법익 간 갈등이 범죄보도 등으로 인해 언론과 개인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제대로 된 피해구제책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범죄보도의 경우에는 인격적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이를 보도한 언론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범죄보도는 언론의 사회 감시·비판 기능의 핵심 도구로서 인식되어 왔다. 대법원은 범죄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¹⁾

그러나 범죄보도는 일반적인 비판보도와 달리 이를 접하는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보도 대상이 ‘범인’이라는 예단을 심어줌으로써 해당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범죄보도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강력한 기본권 침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죄보도는 언론과 형사사법기관의 공동 작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이진국, 2003: 127).

이처럼 범죄보도는 공공성을 지니며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보도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도가 정확히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혐의자가 체포 또는 소환되었다거나 하는 보도가 주를 이루며 형사절차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보도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도 양태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이재진, 2015: 216).

1)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더욱이 혐의자가 추후에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관련 보도로 인해 손상된 명예는 온전하게 회복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보도 양상은 언론 생태계의 양적 팽창으로 예전에는 소위 '잡범'으로 분류되어 잘 다루어지지 않던 수준의 혐의사실도 그 양태가 매우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 환경 속에서 범죄보도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범죄보도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제17조에 범죄보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항'(윤진희, 2019: 120)의 의미를 갖는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다.²⁾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혐의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리는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1987년에 신설된 추후보도청구권은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되었고, 언론과 일반인의 인식 부족 때문에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이석연, 1992: 26).

그러나 국민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신장되고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언중위 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 이후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는 양적으로 괄목할만하게 증가하였다.³⁾ 청구된 사건의 피해구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추후보도 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⁴⁾은 매년 90%를 상회(92.3%~99.6% 분포)하여 정정보도

2) <언론중재법> 제17조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언중위가 청구별 조정신청 처리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 조정사건은 2010년까지 줄곧 50건 이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2011년에 148건으로 급증한 후 당해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약 163건을 기록하고 있다.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8년으로 287건이 청구되었다(언론중재위원회, 2012: 198-199; 2015: 23-24; 2018: 14-15; 2019: 14-15; 2020: 18-19).

4) 피해구제율 = [조정성립 + 직권조정결정(동의) + 취하(구제) + 그 외 피해구제건] × 100 / [전체 조정청구건수 - (계속 + 기각 + 각하 + 계류)].

청구(67.3%~79.4%) 및 반론보도청구(65.9%~77.6%) 사건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18: 14-15; 2019: 14-15; 2020: 18-19).

이처럼 추후보도청구권은 도입된 지 30여년이 경과하며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학계와 실무 영역에서 해당 청구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많지 않다. 1987년 청구권 도입 당시 진행된 박용상(1987: 67-71)의 연구,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판결공시제도와 추후보도청구권의 관계를 비교한 이석연(1992: 19-26)의 연구는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의의를 세밀하게 고찰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반론권 연구의 주된 관심 대상이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에 집중되며 이후 추후보도청구권을 중심 소재로 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⁵⁾

현재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법 연구에서 보도계재 청구권의 하나로 열거되며 개념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는 반면, 범죄보도에 대한 핵심적인 피해구제 수단인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연구는 답보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추후보도청구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윤진희(2019)의 연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 사각지대 문제를 살피고자 한다.

우리는 행정기관이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기업에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거나, 공직자를 중징계에 처한 사실이 보도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 안전, 공정, 청렴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도 역시 범죄혐의자에 대한 형사상 처분 사실을 다루는 보도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인정할 여지가 높을 것이다. 그런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심판 또는 소를 제기하여 처분이 무효·취소로 된 경우, 위 당사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어 명예를 침해당한 것이므로 그 회복을 위해서는

5) 예외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추후보도청구 제도를 소개한 김형준(1998)의 연구가 있다. 또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언론피해 구제제도간의 관계 측면에서 추후보도청구권의 성격 및 의의가 논의된 적은 있다(구본권, 2015: 43-44; 이재진·구본권, 2008: 199-201).

추후에 변경된 사정이 보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기간을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여 이를 무효·취소로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위 제척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은 수단은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뿐인데, 여기서 당사자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왜냐하면 추후보도청구는 범죄보도에 관한 형사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언증위에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된다.⁶⁾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여기서 극단적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마을 이장 A씨는 이웃 주민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된 사실이 지역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이후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B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중앙일간지에 보도됐으나 형사상 조치는 당하지 않았고, 이후 징계무효화인의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였다. 여기서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죄질의 혐의가 보도되었지만 형사절차가 개시되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B씨는 그보다 훨씬 비난가능성이 높은 혐의로 직장에서 파면까지 당했으나 형사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현행 추후보도 제도는 ‘형사절차 개시’라는 엄격한 요건 때문에 명예회복이 절실한 피해 당사자의 피해구제 청구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⁷⁾ 징계와 형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및 그 사유를 각각 달리하는 것이므로 형사재판 결과는 징계사유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⁸⁾

행정처분 일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

6) <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1항 “신청인이 …, 조정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중재부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7)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110 판결.

8)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⁹⁾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최초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형사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형사절차 미개시를 이유로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보도 피해자를 위한 청구 요건 완화 필요성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 요건, 연혁과 의의를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분석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의 피의사실 보도로 인해 침해된 피의자의 인격권을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인정되는 특수한 유형의 반론권으로 이해되며, 이와 유사한 절차로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자의 미결구금에 대한 금전보상 외에 그 보상결정의 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해 신청인이 선택하는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씩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결정의 공시제도(제25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자신에 관한 기사가 실린 모든 매체에 대해 무죄판결 등 사실을 기사로 공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과는 그 게재방법과 효과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윤경, 2003: 22-23). 추후보도는 그만큼 범죄보도 피해구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후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추후보도청구 요건

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었을 것

추후보도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되어야 한다. 즉 범

9) 대법원 2017.6.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죄보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데,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규정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거나, 검찰, 경찰 기타 사법 경찰관에 의해 입건되었거나 특정한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등 ‘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졌다는 등의 보도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 또는 발부되었다거나 피의자로 소환되었다고 보도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한 범죄혐의로 고소·고발되었다거나 진정 또는 언론의 자체 취재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경우도 청구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수사기관에 단순 참고인으로 소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면 이 자체로서는 부족하지만, 용의자 일 수 있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면 추후보도 청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박용상, 1987: 68; 2008: 1173). 이때 민사상 과태료 처분 또는 불법행위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행정법상 강제처분에 처해질 비위사실의 보도는 제외된다(박용상, 1987: 68; 2008: 1173).

법문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면 원보도에서 수사기관이 혐의자에게 어떠한 형사상 조치를 내렸는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한다. 따라서 사법 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박용상, 1987: 68; 2008: 1173).

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것

범죄보도 피해자가 추후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기소 후)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불기소결정 중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났’)로 종결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결’이란 무죄판결의 경우 그것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항고나 재정사건이 계류 중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약 상소심이 계류 중인데 하급심 판결에 근거하거나, 항고나 재정사건이 진행 중인데 지방검찰청의 처분을 이유로 추후보도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형사절차가 미결된 상태에서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칙적으로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거나 처벌 가치가 낮아 행해지는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추후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윤경, 2003: 23).

반면 피해자가 보도된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거나 사회통념상

유의미하게 죄질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살인 → 과실치사)에는 그 범위 안에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강도에서 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혐의사실이 유사성을 띠면 피해자가 추후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지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박용상, 1987: 69; 2008: 117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후보도청구 사건의 피해구제율은 정정·반론 게재 청구 사건보다 월등하게 높았는데, 이는 언론사 입장에서 청구 수용이 용이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판단된다.¹⁰⁾ 정정 또는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경우 언론사는 신청인이 구하는 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취재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합의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면 추후보도청구 사건은 이미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¹¹⁾ 해당 종결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추후보도를 게재하는 것은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김형준(1998: 14)은 추후보도청구 사건의 처리결과가 만족스러운 편인 이유가 “기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뚜렷하게 나타나 언론사가 비교적 쉽게 수공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동원(1999: 45)은 사법기관이 무죄판결 등을 내린 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추후보도는 “언론사가 의무적으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책임이며 법 정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라 당연히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할 사안을 보도 여부에 관해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므로 추후보도청구는 입증자료만 제출되면 ‘중재결정(현재의 <언론중재법> 제2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추후보도청구의 경우, 이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되어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와 같이 언론사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언론사에게 부당하게

10) 일례로, 2019년에 처리된 추후보도청구 사건 총 152건 중 약 73.7%(112건)가 피해구제를 전제로 취하되었다(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사건은 각각 약 22.7%, 22.3%)(언론중재위원회, 2020: 19). 이는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심리가 개최되기 이전에도 언론사가 추후보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구제에 신속히 협조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사법적 판단을 요건으로 하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사법적 판단은 항상 실제적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사법판단 무오류’ 신화에 기대고 있다”고 하거나, “사법 권력의 행사 방법, 행사 결과 역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견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전제로 한 제도 설계로 인해 사법판단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견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시각(윤진희, 2019: 134)도 존재한다.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시하며, 추후보도청구는 정정보도청구에 비하여 사실인정 문제에서 자유로움을 강조하였다.¹²⁾

이처럼 보도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조정합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정정·반론보도청구 사건에 비해 추후보도청구 사건은 피해자의 무고에 관해 사법기관이 신빙성을 부여한 입증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 청구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를 마땅히 찾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범죄 보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나 고소·고발인 일방의 주장에 기초하여 생산되는 현실 속에서, 무죄판결 등은 언론사가 자신들이 생산한 범죄보도의 책임을 혐의사실을 제공한 수사기관 등에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추후보도청구 수용의 용이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추후보도청구권(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언론사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추후보도청구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보도 및 형사절차 종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중재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 거부 사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행사는 동법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거부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먼저 동항 제1호에 따른 거부 사유는 ‘피해자가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이다.¹³⁾ 언론사가 원보도가 나간 방송 프로그램 또는 지면에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피해자의 명예나 권리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미 보도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추후보도를 구할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청구된 추후보도가 피해구제에 필요한 범위나 분량을 넘어 장황하게 서술된 경우에도 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¹⁴⁾

이어서 동항 제2호의 거부 사유는 ‘청구된 추후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¹⁵⁾ 만약 피해자가 구하는 추후보도가 판결문에서 판시한 내용과

12) 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결정.

13) 대법원 1997.10.28. 선고 97다28803 판결.

14) 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63138 판결.

15) 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판이하게 다른 사실관계를 담고 있거나,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거부 사유는 ‘청구된 추후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는 추후보도에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구성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동항 제4호에 따른 ‘추후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이나, 예를 들어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 표시 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람이 해당 식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추후보도에 그 효능·효과를 적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동조 제5호에 따른 마지막 거부 사유는 ‘청구된 추후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에 해당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에서 특정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공표된 주장이나, 공개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바, 또는 재판 진행 내용을 충실히 사실대로 보도한 경우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박용상, 1987: 70; 2008: 1176; 이석연, 1992: 25).

위에서 열거한 추후보도청구 거부 사유가 하나라도 존재할 경우 피해자가 언론위에 접수한 조정신청이 중재부에 의해 기각될 수 있다.¹⁶⁾ 이는 피해자가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추후보도청구권의 도입과 변천

1987년 11월 28일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온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인쇄매체에 대해서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물법>)이,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제정되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 때 추후보도청구권이 신설되었다. 당시 <정간물법> 제정 심사를 위한 국회 회의록을 보면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정정보도청구권과 아울러 추후보도청구권을 추가”하였다는 제안 설명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국회 문교공보위원회, 1987.10.30.:

16) <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9조 제2항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내용이 법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987.10.31.: 4),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 피해자의 반론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추후보도청구 제도가 비교법 연구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만의 고유한 언론피해 구제제도라는 주장이 있으나(윤진희, 2019: 113), 이는 외국 입법례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반론권 행사를 위한 법정 분쟁조정 기구를 운영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이재진, 2013: 36)에 기초한 오해로 보인다.

오히려 우리나라 추후보도청구권은 1982년에 시행된 오스트리아 <언론매체법(Mediengesetz)> 제10조의 ‘형사절차의 경과에 관한 추후보도(nachträgliche Mitteilung)’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평가가 타당하다(박용상, 1987: 67; 2008: 1172; 이석연, 1992: 23-24). 동조 제1항은 “정기적인 언론매체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도된 사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해당 언론매체는 그에 관하여 무료로 보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조 제2항은 “추후보도는 그 내용이 요구된 권리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며 관계된 보도에 쓰여진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에 시행된 <정간물법>상 추후보도청구권은 이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후 1996년 7월 1일 개정된 <정간물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때 추후보도청구가 가능한 형사절차 종결 형태를 기존의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에서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개정하여 추후보도청구 요건이 범죄혐의가 실질적으로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 때 추후보도청구 기한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다. 이후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구제제도가 2005년에 시행된 <언론중재법>으로 통합되며 추후보도청구권도 동법에 포섭되었다. 이때 법문에 눈여겨볼 만한 변경이 발생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고 정한 것에 반해, 신설된 법률에서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

17) 구 <정간물법> [법률 제3979호, 1987.11.28.] 제20조 ①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7조 제2항), 추후보도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추후보도청구권의 기능과 성격

전술한 바와 같이 추후보도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과 더불어 언론사의 공격에 대해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하나로 인정된다(이동훈, 2015: 108). 이러한 방어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이 분명한 이상, 언론기관에 의하여 인격권 등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¹⁸⁾

범죄사건은 수사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한 시기적 거리로 인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실이 반드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적 인물이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입건 사실부터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언론과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끌며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보도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최초 입건 사실만 보도되고 이후 사건 진행 경과는 베일에 싸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후보도청구권은 이렇게 사건의 결말을 모르는 대중에게 피의자의 무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도입 초기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보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써 〈형법〉상 판결공시제도를 흡수·대체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었다(이석연, 1992: 26). 판결공시제도는 법원의 재량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여 무죄판결 사실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 반해,¹⁹⁾ 추후보도청구권은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무죄판결 사실을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하는 것이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권리 실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18)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65 결정.

19) 구 〈형법〉 [법률 제293호, 1953.9.18.] 제20조 제58조 제2항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2014년에 관련 〈형법〉 규정이 개정되어 피고인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김태희(2007: 11)는 추후보도청구권이 범죄보도에 대한 정정 및 반론권 행사의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정정보도청구권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무 영역에서 추후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언중위가 2008년에 발간한 실무서에서는 추후보도청구를 범죄보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의 반론보도청구라고 설명하고 있다(언론중재위원회, 2008: 77).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지만 반론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범죄보도 피해자가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가 어떠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진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보도청구는 보도의 허위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의 일종인 범죄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로 이해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에서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면, 추후보도청구권은 단순히 범죄혐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만을 기계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닌, 신청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조 제4항에서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범죄혐의가 보도되었을 때 먼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후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권리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박용상, 1987: 68; 2008: 1173).

추후보도청구권의 핵심 기능은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이 실현하지 못하는 범죄보도 피해구제의 공백을 제거하는 것이다(박용상, 1987: 67; 2008: 1171). 반론보도청구권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의 반박 주장을 보장하는 차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고함을 알리는 수단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수사상 용의선상에 올랐거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상 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진실하다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두 청구권의 행사기간(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을 훌쩍 초과할 가능성이 높

은 문제도 있는데, 추후보도청구권은 이러한 부정의를 시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보도청구권은 과거 기사가 용의자의 체포 등 사실을 보도한 것이지만 이후 무죄 판결 등 정확한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불충분한 보도만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바로잡음’ 행위라고 평가되기도 한다(구본권, 2015: 43). 즉 과거 기사의 오류 때문만이 아닌 중요한 사실 변경이 생겼을 경우 충실한 보도로 만드는 행위로서, 기사의 보도 시점이 아닌 사실 변경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정보의 정확성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와 관련된다는 것이다(구본권, 2015: 44). 추후보도청구권이 언론이 재판 보도에 충실을 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법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법 이론이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도구로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기도 한다(유용민, 2017: 165-166).²⁰⁾

종합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은 보도 당시 기준으로 진실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성격을 지니고,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 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다. 반면 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 당시에는 진실한 사실(범죄혐의를 받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였으나 수사 또는 재판 결과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체척기간이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을 후 6개월인 반면,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달리 정한 것도 추후보도청구권의 특수한 기능과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보도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청구권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만으로는 어려운 피해구제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재판절차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된 바를 충실히 보도한 경우 추후보도청구권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평가는 추후보도청구 배제 사유를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재판 보도를 제외한 다른 형사절차 관련 보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Ⅲ. 분석 결과²¹⁾

1.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의 한계

개인이나 법인이 <형법>상 또는 기타 특별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법상으로도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이 비위사건에 연루된 경우 해당 기관장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여러 사정 등을 이유로 혐의자가 고소·고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고, 이후 징계무효확인인 소를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그가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보도청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언중위 조정제도의 효용성을 저하하는 입법공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를 중요한 청구 요건 중 하나로 하는 현행 추후보도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보도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으나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은 자의 인격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19년 언중위에 접수된 조정사건 중에서도 그러한 한계에 따라 각하결정을 받은 사건들이 있다.²²⁾

해당 사건 피신청인 5개 언론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제품을 회수 조치한 사실을 보도하며 해당 제품명 및 제조사명을 공개하였다. 위 업체는 재판 결과 위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자기품질검사 결과가 부정되어 행정명령이 취소되었으므로,²³⁾ 그러한 사실을 보도하여 달라는 추후보도청구를 하

21)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언중위에 접수된 추후보도청구 사건 처리결과 및 같은 기간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한 추후보도청구 사건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 언중위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및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기능을 사용, 검색어를 ‘추후보도’로 설정하여 검색을 병행함)에서 형사절차를 수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된 사례를 수집하였다. 총 5건의 사례(언중위 조정사건)를 확보하였는데, 사례 수가 적은 이유로는 언중위 사건 신청이나 소송을 위한 상담 등 검토 단계부터 형사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 추정된다. 다만 그러한 상담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2) 2019서울조정1704, 2019서울조정1705, 2019서울조정1706, 2019서울조정1707, 2019서울조정1708(병합)(언론중재위원회, 2020: 161-162).

23) 국내 식품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수 명령 취소’ 결과를 얻어낸 것은 해당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 (매일경제, 2019.9.22.).

였다. 그러나 담당 증재부는 해당 청구가 추후보도청구 요건인 ‘형사상 조치’에 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청인의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의 근거로 삼은 위반 사실은 신청인이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것이었다.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제7조 제4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으므로(제95조 제1호), 위 사건에서 문제된 조정대상보도들은 신청인의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임이 명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한 형사절차가 개시된 바 없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래 〈표 1〉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가 형사절차 및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1〉을 통해 앞서 각 하결정을 받은 언론위 조정사건과 같이 범죄혐의 또는 그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었으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요건의 형평성 문제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표 1〉의 ‘CASE 3’처럼 형사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범죄보도 또는 행정처분보도 피해자는 추후보도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의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로 종결된 시점이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는 후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두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이나 소가 각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범죄혐의나 그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진실한 이상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다. 반론보도 역시 피해자 일방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청구권들로는 범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온전히 도모하기가 부족하다. 추후보도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최초에 진실한 사실보도였으나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공백을 메우는 것인 만큼 ‘CASE 3’에 해당하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표 1〉 범죄보도 피해자의 추후보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구 분	형사절차 여부	행정처분 여부	청구권 행사
CASE 1	○	○	가 능
CASE 2	○	×	가 능
CASE 3	×	○	불가능
CASE 4	×	×	불가능

2. 범죄혐의 관련 행정처분보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범죄보도는 혐의사실을 과장·왜곡하고, 이를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의 근간을 흔들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인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기업이나 개인은 치유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이승선·김연식, 2008: 78). 특히, 수사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 등이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범죄혐의가 보도된 경우, 일반 독자들은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언론기관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보도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²⁴⁾ 이처럼 수사기관뿐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업 또는 개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내린 사실이 보도될 경우 일반 독자들은 그 대상이 ‘유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인식할 우려가 크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국가공무원 임용의 여러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 중 동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조 제8호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69조 제1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면직 됨을 규정하고 있다.²⁵⁾ 해임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담임권 등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상의 불이익 효과가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불이익한 행정처분 보도의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명예

24)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25)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훼손 정도를 어떠한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경우 이상으로 크게 지각할 수 있다. 기업이려면 부정적인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됨에 따른 이미지 및 신뢰 손상이 거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도 더욱 치명적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로서는 언론이 행정청의 공식 발표에 의하지 않고 자체 취재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경우 언론에 고의·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언론위에 추후보도청구는 물론 그와 함께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²⁶⁾ 이 경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해구제 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필요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언론위 조정절차 대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는 소송절차를 밟아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한다.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상 피해구제 사각지대의 실례로 언급한 언론위 각하사건 담당 중재부도 해당 사건 각하결정문에 “형사절차에 관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기속력 있는 판결 등으로 과거 보도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새로운 보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입법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언론중재위원회, 2020: 161). 실무 영역에서도 추후보도청구권의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결국 경미한 범죄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은 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행정처분 보도의 대상자는 형사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추후보도청구권 행사가 불가한 문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이익형량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에 대한 권리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로서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6) <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정정보도청구권 및 반론보도청구권의 제척기간 만료 전이라면 해당 청구권을 행사하며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IV. 추후보도청구권 개선 방안

이 연구는 추후보도청구권 개선 방안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제17조에 대한 개정안을 <표 2>와 같이 제시한다. 아래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대로라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다면 해당 보도에 피해자가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적시되었는지 여부는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성립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제1항에서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전제로 삼은 부분은 삭제하였다. 그 외 추후보도의 내용(제2항), 추후보도청구권의 정정보도청구권 준용(제3항), 타 보도게재 청구권 행사와의 관계(제4항)에 관한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다.

<표 2>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호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7조(추후보도청구권)</p> <p>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7조(추후보도청구권)</p> <p>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거나, <u>관련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위 개정안에 따라 추후보도청구권을 신규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먼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한다.²⁷⁾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인 징계처분²⁸⁾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도 행정처분에 포함된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 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²⁹⁾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인 직위해제 처분 역시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처분에 속한다.³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은 공법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발의(심판제기)에 의해 행정기관이 심리·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사법 절차가 준용되는 권리구제절차이다(김민섭, 2018: 114-115).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그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까지 판단하므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구제하는 것이 장점이다(정태용, 2007: 707). 위와 같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된다면 이는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추후보도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명령 또는 변경명령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처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이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의 고용계약, 임금 지급, 인사권 행사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인사권의 행사인 징계처분도 사법적 법률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이건우, 2008: 215). 대법원도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 아

27)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결정; 대법원 2004.3.4. 선고 2001무49 결정 등.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8)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77 판결.

29)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30) 대법원 1970.11.30. 선고 70누132 판결.

닌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³¹⁾ 다만, 이와 별개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해당 소청심사의 법적성질은 공법상 법률관계가 된다(이동찬, 2008: 379).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절차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함과는 별개로 학교법인의 원처분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추후보도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정안에 따른 완화된 추후보도청구 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원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인간의 분쟁이 민사판결 등으로 종결된 경우는 추후보도청구 요건에 포섭하지 않았다. 추후보도청구권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보도란 <형법> 기타 특별법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혐의에 관한 보도로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보도는 제외된다. 또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더라도 그 위반사실에 관한 행정벌 규정이 없다면 이 또한 추후보도청구의 요건이 되는 범죄보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범죄보도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사회 일반에 국가가 범죄 주체에게 어떠한 형벌권을 행사하는지 인식시킴으로써 공권력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대중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범죄 예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사건에 대한 민사상 쟁송은 손해배상청구 등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사적 분쟁이므로, 그것이 보도될 가치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³²⁾과 같이 그 재판결과 보도의 공공성을 인정할 여지가 높을 것이다.³³⁾ 특히, 행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인정

31)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

32) 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33) 민사소송이 사익을 중시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실제적 공·사익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최선웅, 2003: 150-151; 2005: 49-51).

되었다면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보도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처럼 범죄보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필요성과 언론의 자유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추후보도청구권 완화에 따른 신규 적용 범위는 행정처분에 국한하여 제안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1987년 <정간물법>에 의해 추후보도청구권이 신설된 것은 언론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제도상의 큰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이재진, 2015: 217). 실제로 추후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반론보도청구권과 유사하나, 정정·반론보도청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후보도청구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언론계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보도 양태도 다양화하면서 추후보도청구권으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들이 속출하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이 형사절차 개시 여부라는 엄격한 행사 요건으로 인해 형사절차가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 된 범죄보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권리 위에 잠지는 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는 옐리네크의 법언은 권리 행사에 태만한 이들을 꼬집는 내용이지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형식의 굴레에 갇혀 그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면 피해자는 부당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조치를 받은 자와 동질적이거나 더욱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혐의가 보도되었는데,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형평에 상당히 어긋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기도하기 때문이다.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는 국가-언론-피해자의 삼각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양상이 뚜렷하고 행정처분보도도 행정청의 보도자료 배포 등 국가의 적극적인 공표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추후보도청구권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권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행정처분이 종결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추후보도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언론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 사실이 보도될 경우 비교적 가벼운 범죄혐의가 보도된 것보다 개인, 기업 등 당사자에게 더욱 극심한 명예·신용훼손 등 인격권 침해할 유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뒤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보호가 잘 이루어지는 반면,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심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요건상의 문제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가 제시한 추후보도청구권 개정안의 실무 적용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행정청이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재차 징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추후보도청구 요건이 성립하는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만약 무효확인·취소 등의 사유가 절차상 위법 때문이었는데 적법 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추후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므로,³⁴⁾ 피해자에게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징계양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나,³⁵⁾ 동일한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새로이 하여 원처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이다.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보도된 혐의보다 죄질이 낮은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해임·징직·강등·감봉·견책으로 여섯 단계에 불과하며,³⁶⁾ 각 처분의 간극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도에서 원처분 사실이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해당 처분이 무효확인·취소되었고 그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보도될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그러나 새로운 징계처분의 사유가

34)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12 판결.

35) 대법원 2017.11.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36)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 참조.

보도내용과 동일한 범죄혐의를 이유로 한 것이고, 보도에 원처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내용도 없으므로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징계처분의 경우 사후 상황에 따라 추후보도청구 요건이 성립하는지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법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중재부가 심리를 진행하는 언중위 조정절차에서 추후보도가 게재될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는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를 과연 형사절차의 효력, 무죄판결의 기판력에 일대일로 조응하여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의 요건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논거와 논증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행정처분이 종결된 경우에 대해서까지 추후보도청구권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형사절차 보도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와 무죄판결 등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추후보도청구권 조문의 의미, 구조, 체계와 부합하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보도 및 행정처분보도와 관련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현저하다면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의 구조와 체계를 흔들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추후보도청구권 개정안이 실제 입법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다른 언론피해 구제수단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범죄보도 피해구제의 효용성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추후보도청구권이 구제 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논의 자체가 부족하였고,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추후보도청구권이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구제 수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계 제현의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한 추후보도청구권 확장 방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³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러한 과정을 토대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충실하게 이루는 추후보도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7) 만약, 피해자가 새롭게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언급 없이 원처분의 무효확인·취소 사실만 보도된다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징계사유도 없었다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용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38) 이와 함께 언론인을 대상으로 추후보도청구권의 역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구본권. 2015. “저널리즘 관점에서 ‘잊혀질 권리’와 언론피해구제 연구: 묵은 기사의 인터넷 삭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섭. 2018.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쟁송물.” 『한양법학』 제29권 제3집, pp.113-133.
- 김태희. 2007. 『한국언론의 범죄보도와 관련된 제문제 고찰』, 용인: 법무연수원.
- 김형준. 1998. “형사사건 언론보도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추후보도 청구권 제도를 중심으로.” 『법률구조』 가을호, pp.12-18.
- 매일경제. 2019. “[기자24시] 식품기업 ‘세림현미’의 억울한 눈물.” (9월 22일), p.A35.
- 박용상. 1987.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겨울호, pp.61-82.
- _____.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언론중재위원회. 2008.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2. 『언론중재위원회 30년사 (1981~201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5. 『2014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8. 『2017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19. 『2018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_____. 2020. 『2019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유용민. 2017. “재판 보도에서의 법리적 쟁점 다양성: 헌법 재판 사건에 대한 주요 종합 일간지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권3호, pp.133-172.
- 윤 경. 2003, 11.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지방토론회. 춘천, 대한민국.
- 윤진희. 2019. “언론중재법상 추후보도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언론과 법』 제18권 제3호, pp.109-138.
- 이건우. 2008.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19집, pp.209-238.
- 이동찬. 2008. “교원소청심사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2집, pp.369-384.
- 이동훈. 2015.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의 헌법적 함의.” 『공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pp.93-114.
- 이석연. 1992. “판결공시제도와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 봄호, pp.19-26.
- 이승선·김연식. 2008.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pp.65-94.
- 이재진. 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_____. 2013. 『미디어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15. 『한국 언론 ADR의 현실과 쟁점』. 서울: 컬처룩.
- 이재진·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 지속적 기사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쟁점: ‘잊혀질 권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2권 -3호, pp.172-212.
- 이진국. 2002. 『언론의 범죄보도와 형사법적 문제점』.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태용. 2007. “행정심판사건의 행정소송결과 분석.” 『행정법연구』 제18호, pp.681-707.
- 제137회 국회 제11차 문교공보위원회(1987.10.30.) 회의록.
- 제137회 국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1987.10.31.) 회의록.
- 최선웅. 2003. “행정소송에서의 석명 의무의 인정근거: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독자성을 모색하며.” 『행정법연구』 제9호, pp.59-155.
- _____. 2005. “행정소송의 목적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연구』 제13호, pp.19-52.
- 한동원. 1999. “언론중재위원회의 활동 평가와 과제.” 『언론중재』 겨울호, pp.39-47.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current right of subsequent notification requiring criminal procedures

Lee, Yechan*·Lee, Jaejin**

Abstract

Article 17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of South Korea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the media to report subsequent notification whe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a person who is reported to have been accused of a crime or have received criminal action are terminated in the form of innocence.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requirements that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the right to request for subsequent notification cannot be exercised unless the party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As a result, there is a risk of injustice that protects the personal rights of those who have been reported on minor charges thoroughly, but blocks remedy for those who have not received criminal charges even though administrative dispositions have been reported on serious charges. This study suggests the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subsequent notification as a solu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request subsequent notification, even whe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e allegation is terminated in the form of invalidity confirmation or revocation judgment. If the above improvements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claim subsequent notification will be able to play a role more substantially in relieving

* Doctoral Student,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Ha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the damages of personal rights caused by criminal reports with effect.

Field: SA0714. Culture/Media/Entertainment/Sports Law, SI0102,
Media/Media Policy

Key Words: Press Arbitration Law, Crime Report, Defamation, Subsequent
Notifica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validation
Confirmation/Revocation Judgment